

「1차 One-Stop 지원 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화성시와 함께 화성지역 소공인의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제품개발·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『One-Stop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6일

화성상공회의소

1 사업개요

- 사업명 : 1차 One-Stop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4년 3월 ~ 2024년 7월
- 지원규모 : 7개사
- 지원내용 : 소공인 시제품 개발 제작을 위한 재료비 및 외주비 등 지원

※본 사업은 화성시로부터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임

| 지원 항목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|--|
| 디자인 및 설계비용 | 시제품 개발 시 외주 업체에 디자인 및 설계비용 등 |
| 원자재 구입비용 |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비용 등 |
| 위탁 외주 가공비용 | 시제품 개발 시 일부 부품을 외주 업체에 위탁 수행하는 실제 경비 등 |
| 금형 제작비용 | 시제품 개발 시 설계를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(목업, 금형제작) 등 |
| 시험·분석 장비임대비용 | 시제품 개발 시 시험분석 지원 및 장비 임대비용 등 |
| 기타 비용 | 위의 열거되지 않은 항목 중 복합지원센터에 사전 승인을 득한 비용 |

- 지원금액 : 업체별 최대 1,000만원(부가세 별도)
※ 부가세 및 지원금 초과액은 신청업체 부담임.
- 지원대상 : 화성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『C22, C24~C31』 9개 업종 소공인 업체

2 지원절차

| 단계 | 주요 내용 | 준비사항 및 관련서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--|----|---|---------|----|---|----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<p>① 신청 접수 (소공인 → 센터)</p> <p>'24.3.26(화)~4.9(화)</p> |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청시 제출서류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제출서류</th> <th>부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</td><td>사업신청서</td><td>1부</td></tr> <tr><td>2</td><td>개인정보동의서</td><td>1부</td></tr> <tr><td>3</td><td>성실이행서약서</td><td>1부</td></tr> <tr><td>4</td><td>사업자등록증 사본</td><td>1부</td></tr> <tr><td>5</td><td>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</td><td>1부</td></tr> <tr><td>6</td><td>국세/지방세 완납 증명서</td><td>각1부</td></tr> <tr><td>7</td><td>One-Stop 개발 계획서</td><td>1부</td></tr> <tr><td>8</td><td>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</td><td>1부</td></tr> <tr><td>9</td><td>시제품 개발 비용 견적서(비교견적서)</td><td>각1부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제출서류 | | 부수 | 1 | 사업신청서 | 1부 | 2 | 개인정보동의서 | 1부 | 3 | 성실이행서약서 | 1부 | 4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 1부 | 5 |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 | 1부 | 6 | 국세/지방세 완납 증명서 | 각1부 | 7 | One-Stop 개발 계획서 | 1부 | 8 |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| 1부 | 9 | 시제품 개발 비용 견적서(비교견적서) | 각1부 |
| 제출서류 | | 부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 | 사업신청서 |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 | 개인정보동의서 |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성실이행서약서 |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 | 사업자등록증 사본 |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 |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 |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6 | 국세/지방세 완납 증명서 | 각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7 | One-Stop 개발 계획서 |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8 |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|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9 | 시제품 개발 비용 견적서(비교견적서) | 각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② 선정평가 (소공인 → 평가위원회)</p> <p>'24.4.12(금)</p> |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(업체당 15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선정평가표 기준 평가 ■ 서류평가 - 시제품 개발 계획서등 신청내용 평가 ■ 발표평가 - 업체당 15분 PT발표(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) ■ 결과통보 - 개별 통보(24. 4. 12 예정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③ 협약 (센터 ↔ 소공인)</p> <p>~'24.4.15(월)</p> | 협약 진행 및 공급업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정 업체는 협약서(센터양식)를 작성하여 센터와 협약 체결 진행 ■ 공급업체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(붙임7)를 받아 센터에 제출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④ 중간점검 (센터 → 소공인)</p> <p>~ '24.6.7(금)</p> | 사업 추진현황 중간 점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현시점까지의 시제품 제작 과정 점검 및 사진등 서류 제출 요청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⑤ 제품개발 완료 (소공인)</p> <p>~ '24.6.28(금)</p> | 시제품 결과물 도출 완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협약서에 제시한 사업기간 이내 시제품 개발 완료하여 결과물 제작 완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⑥ 지원금 신청서 제출 (소공인 → 센터)</p> <p>~ '24.6.28(금)</p> |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제출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제출서류</th> <th>부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<td>1</td><td>지원금 신청서</td><td>1부</td></tr> <tr><td>2</td><td>완료보고서</td><td>1부</td></tr> <tr><td>3</td><td>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</td><td>1부</td></tr> <tr><td>4</td><td>사업비 항목별 추진 견적서(비교견적서)</td><td>각 1부</td></tr> <tr><td>5</td><td>세금계산서 원본</td><td>1부</td></tr> <tr><td>6</td><td>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</td><td>각1부</td></tr> <tr><td>7</td><td>공급업체 통장사본</td><td>각1부</td></tr> <tr><td>8</td><td>지부담액(부가세 + 지원금초과금액) 입금 확인증</td><td>1부</td></tr> </tbody> </table> | 제출서류 | | 부수 | 1 | 지원금 신청서 | 1부 | 2 | 완료보고서 | 1부 | 3 |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| 1부 | 4 | 사업비 항목별 추진 견적서(비교견적서) | 각 1부 | 5 | 세금계산서 원본 | 1부 | 6 |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| 각1부 | 7 | 공급업체 통장사본 | 각1부 | 8 | 지부담액(부가세 + 지원금초과금액) 입금 확인증 | 1부 | | | |
| 제출서류 | | 부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1 | 지원금 신청서 |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2 | 완료보고서 |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3 |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|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4 | 사업비 항목별 추진 견적서(비교견적서) | 각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5 | 세금계산서 원본 |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6 |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| 각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7 | 공급업체 통장사본 | 각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8 | 지부담액(부가세 + 지원금초과금액) 입금 확인증 | 1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p>⑦ 지원금 정산 (센터 → 공급업체)</p> <p>~ '24.7.19(금)</p> | 공급업체에 지원금 입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공급업체로 지원금 입금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※ 세부추진 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

3 모집안내

- 공고기간 : 24. 3. 26(화) ~ 4. 9(화) 17:00까지
- 신청방법 : 팩스 또는 이메일, 방문접수
 - * 이메일 주소 : hssmcenter@gmail.com
 - * 팩스 : 031-296-7909

4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

- 선정방법 :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표 기준 평가
 - (서류평가) One-Stop 개발의 사업계획, 기술 역량 등
 - (발표평가) 개발업체 현황, 추진과제의 타당성, 기대효과 등 업체당 15분 발표
- 선정기준 :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, 동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함
 - 1순위 : 추진과제의 타당성 고득점 업체,
복합지원센터 장비활용 계획이 있는 업체
 - 2순위 : 기대효과의 고득점 업체
- 결과통보 : 선정업체 개별통보

5 유의사항

- 지원선정 취소
 -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
 - 선정통보일 이전에 과제 수행을 진행하여 시공(제작)한 경우
 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
 - 사전 변경 승인 없이 외주 업체 및 과제 주요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
 - 지정 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허위·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과제를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
 -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, 휴업, 사업장 양도, 지방세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 - 관련법을 위반, 과제 부실 등 화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지원 신청내용 변경 및 포기

-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 내용 변경, 외주 업체 변경 발생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
- 사전 센터와 협의 없이 지원 포기의 경우 이후 2년간 센터 지원사업에 제약이 따름

공급업체(제작업체) 선택 시 유의사항

- 공급업체는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 중에서 복수 견적을 받아 가격이 낮은 업체를 소공인이 직접 선정
- 신청서 견적품목과 관련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함
- 공급업체는 2개사 이내로 한함.
- 신청업체 본인과 가족관계(부모, 조부모, 형제 등)에 해당하는 공급업체 선정 불가
- 납품관련 이견 사항은 소공인과 공급업체간 해결해야 함
- 공급업체에 지원금 입금 시점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 시켜야 함

견적서(비교견적서) 제출 시 유의사항

- 견적서(비교견적서) 제출시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

| 구분 | 필수항목 | 필수기재사항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견적일 | 사업 모집 기간 내 |
| 2 | 공급 받는자 | 사업 신청 업체명 |
| 3 | 공급업체 | 도장날인, 업체명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|
| 4 | 견적 내용 | 품목, 규격 및 사양, 수량, 단가, 공급가액, 부가세 |

※ 원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에 동일한 품목, 규격 및 사양을 기입하여 상호 가격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제출

6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완료보고

지원금 신청 제출 기한 : 2024. 6. 28(금) 17:00까지

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 제출 서류

| 구분 | 제출자료 목록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필수 | 1. 지원금 지급신청서 | (붙임8 서식) |
| | 2. 완료 보고서(제작 과정 사진 첨부) | (붙임9 서식) |
| | 3.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1부 | (붙임10 서식) |
| | 4. 제작견적서(비교 견적서 포함) 각 1부 | |
| | 5.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| |
| | 6.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| |
| | 7. 공급업체 통장 사본 각 1부 | |
| | 8. 자부담 입금 확인증 각 1부 | (부가세 + 지원금초과금액) |

□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

- 시제품 제작 완료된 업체는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
-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 등이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 불가
- 제작 과정 사진 미첨부시 지급 불가함으로 반드시 제작 과정 사진 확도에 유의
- (지출증빙) 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

□ 제작비용 자부담 입금 및 지원금 지급관련 유의사항

- 부가세 및 지원금초과액은 신청업체 부담
- 자부담 입금시 대표자(또는 법인) 명의의 통장에서 상대 업체 대표자(또는 법인) 계좌이체만 인정
- (자부담 입금 증빙) 송금 확인증 등으로 입금받는자(공급업체)의 예금주, 은행명,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
- 센터는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
- 지원금 지급의 방식
 - 센터에서 공급업체에 지급(사전에 지원금 지급기한에 대해 반드시 협의 되어야 함)

7 제재 조치 등

□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 조치

- ※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화성상공회의소의 [기업지원사업 운영 규정]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수반시)
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2년간 또는 영구 배제)

•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

- 자부담금(부가세 포함) 경감 또는공급업체 대납, 신청업체 휴·폐업, 사업장 양도, 부실시공, 관련서류 위·변조, 선정통지일 이전 과제 시행,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

8 문의처

□ 담당자 : 유가영 매니저 031-296-7900, 070-4488-1503